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4호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9 0 3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 공	고 제 9 0 5 호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4
○ 공	고 제 9 0 6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5
○ 공	고 제 9 1 8 호	일반게입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
○ 공	고 제 9 2 6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13
○ 공	고 제 9 3 5 호	공유재산(구유지, 장수동 129-8)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공고	1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2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4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8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6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4

고 시

○ 고	시 제 6 0 호	도로명주소 고시 및 공고	96
○ 고	시 제 6 1 호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10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0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버7930, **오3883, **루8601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 7.(화) ~ 5.22.(수)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버 7930	이*현	2019-05-03	폐문부재	보조제동등 점멸	215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 (간석동, ****)
2	**오 3883	이*호	2019-05-07	폐문부재	글라스윙 및 리플렉 터 LED 장착	216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3	**루 8601	박*희	2019-05-03	폐문부재	보조제동등 숨쉬기 모듈 장착	21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층 ****호(간석동,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05호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관리계획 변경(안) 입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m ²)			비고
				당초	증감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1개 시설							
신설	남동IC 화물공영 차고지	남동구 남촌동 510-31번지일원	형질변경	-	20,133	20,133	
			건축 연면적	-	60	60	

※ 위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및 중도위 심의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72)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 관련서류: 따로 불임(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906호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포구 어시장】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장 : 소래포구 어시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외 1필지
- 다. 사 업 내 용 :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조성
-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고시일 ~ 2019. 12. 31.
- 마.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보상내용 : 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물건)조서 참조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 5. 8. ~ 2019. 5. 23.(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공영개발과)
(☎ 032 - 453 - 5688, Fax 032-453-5689)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누락여부 확인
-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서식 1)

4. 보상방법 등

가. 보 상 시 기 : 별도보상통보(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개인별 현금 보상원칙(계좌입금)

다. 보상금액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인 청구에 따라 소유권 이전 후 일시불 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공탁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붙임 1 서식 참조)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동구청 공영개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가.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다.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공시송달공고로 대신 합니다.

라. 미 등기 상태의 실제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5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연번	지번 (논현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111-168	잡	4,030	4,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만수동)				
2	111-462	잡	200	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소래로 633(만수동)				
계			4,230	4,213						

□ 물건조서

번 호	소 재 지		명 칭	구 조	면적(㎡)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전체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1	논현동	111-65	상가	시멘블록	121.45	71.66	49.79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동)	1층
			상가	시멘블록 양철스트리트	121.45	71.66	49.79			2층
			처마		28.32	28.32	—			1층
계					271.22	171.64	99.58			
2	논현동	111-66	상가	시멘블록	162.00	14.89	147.11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동)	보상 및 지장물철거 완료
			상가	시멘블록 스라브	162.00	14.89	147.11			
			상가	샌드위치 판넬	162.00	14.89	147.11			
			처마		12.96	12.96	—			
계					498.96	57.63	441.33			
3	논현동	111-67	상가	시멘블록	67.24	8.21	59.03	황**	서울 동작구 ****로 **길 * *, ***동 ****호 (**동, **아파트)	보상 및 지장물철거 완료
			상가	시멘블록	84.55	5.29	79.26			
			상가	시멘블록 스라브	164.09	14.66	149.43			
			처마		26.88	26.88	—			
계					342.76	55.04	287.72			
4	논현동	111-167	냉동 창고	샌드위치판넬	6.12	1.31	4.81	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동)	보상 및 지장물철거 완료
			상가	시멘블록 샌드위치판넬	62.86	—	62.86			
			처마	샌드위치판넬	25.82	15.98	9.84			
계					94.80	17.29	77.51			

<서식 1>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19.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대리인은 불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2>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18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자(체)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1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법적근거
 -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나.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19.05.09.(목) ~ 2019.05.24.(금) (15일간)
5. 의견제출일 및 의견제출장소 : 2019.05.24.(금) 18:00까지 남동구청 6층 문화관광체육과
(※ 의견제출 기한 : 2018.05.24. 까지)
6. 위반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예정처분)
1	일반 게임제공업 (2017-4)	스타 게임랜드	김 O 두	인천 남동구 백범로 338, 2층 (간석동)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2018.11.14. 16:15경)	영업정지 1월

7. 행정처분 예정일 : **2019.05.27.(월)**

8.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1월)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2019. 5.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1월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926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5.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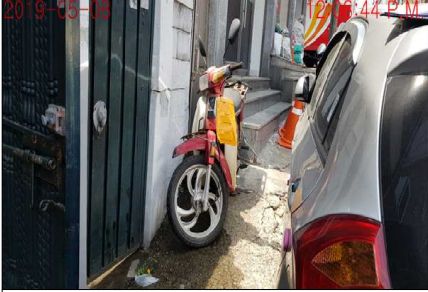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5.10.~2019.05.24.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3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9-21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08. ○ 견인일 : 2019.05.24.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02번길 14-1 종로인테리어 옆
	2019-2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08. ○ 견인일 : 2019.05.24.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349-535 모래마을3호 공영주차장 내
	2019-22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08. ○ 견인일 : 2019.05.24.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22-1 청송각 앞 도로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2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대로702번길 14-1 종로인테리어 옆	2019.05.24. 이후	견인예정	
2	2019-002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4동 349-535 모래마을3호 공영주차장 내	2019.05.24. 이후	견인예정	
3	2019-002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1동 1222-1 청송각 앞 도로	2019.05.24.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35호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5.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 매각 지명경쟁입찰

나. 매각재산의 표시

대상토지	지목	면적(㎡)		매각예정액(원)	입찰참가 대상자	비고
		지적	매각			
장수동 129-8	답	9	9	15,693,850	연접토지주 최○대 최○석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19. 05. 13(월) 10:00 ~ 2019. 05. 27(월) 16:00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19. 05. 28(화) 10: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명경쟁입찰 참가대상 통지를 받은 자로 매각대상 구유지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마친 자

4. 현장설명 안내

-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별도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현황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 방법

- 가. 본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합니다.
-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환불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한 가격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찰결과-공공기관입찰결과 또는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 규칙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금액납부가 입찰금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다. 구비서류

- ▶ 신분증,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인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11. 매각대금 납부 방법

- 가. 계약금 :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
- 나.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구가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납부
- 다.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나. 재산활용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반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 지라도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 취소 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마.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반 수속(변상금 납부 등)은 매수자가 부

담·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본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지장물 등의 제거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법시행령 포함)」에 의합니다.

13. 기타 문의처

가.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기타 매각재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032-453-2272)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제7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항과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7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삭제(안 제43조~제4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5. 16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응하여야”를 각각 “따라야”로 한다.

제18조 중 “의회는 인천광역시”를 “의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반려하여야”를 “되돌려 보내야”로 한다.

제20조 제6항 중 “반려하여야”를 “되돌려 보내야”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7장(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0조 제2호 중 “명예를 높이 선양한”을 “명성을 떨친”으로 한다.

제58조 제2항 중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를 “일련번호를 매긴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사보조 대상업무						
심사보조자 (자문위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촉기간						
위촉이유						

- ※ 첨부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자격증사본 1매
 ③ 경력증명서 1통

()위원회위원장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증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9호서식]

포 상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경력		추천순위	
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u>범위 내</u>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u>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략)	<u>남동구의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남동구의회</u> ----- ----- -----.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 ----- ----- ----- <u>남동구의회</u> ----- ----- ----- ----- ----- ----- ----- ----- ----- <u>범위</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u>의회</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전문가의 활용) ①·② (생략)

③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8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② -----
----- 남은 기간-----.

제16조(전문가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하는 -----
-----.

④ ----- 대
서-----
----- 범위-----
-----.

⑤ -----

----- 따라야 -----
----- 따라야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의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하 "구"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
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 ② (생략)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
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
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조사) ① ~ ⑤ (생략)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
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
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26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
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
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7조(증인의 보호) ① (생략)

② 증인이 의회에서 한 증언의 사
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구성) 의회는 -----

-----.

제19조(감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되돌려 보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되돌려 보내야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야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증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발급 -----.

제3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

③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④ (생략)

⑤ 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30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3조(윤리강령)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징계) -----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

-----.

<삭제>

<삭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4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3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

<삭 제>

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
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
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12.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
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4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제43
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
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
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
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
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정한다.

제46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

<삭 제>

<삭 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경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0조(포상대상) (생 략)

1. (생 략)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 · 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 5. (생 략)

제58조(수상자 명부) ① (생 략)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의 구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삭 제>

제50조(포상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명성을 떨친

3. ~ 5. (현행과 같음)

제58조(수상자 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일련번호를 매긴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김안나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변경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 안 제12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비 : (안 12조 ~ 제 1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5. 16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남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역시”를 ““성별영향평가”란”으로, “분석평가하여”를 “성별영향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반영하 여야”를 “반영하여야”로, “기금운영”을 “기금운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을 “특정성별영향평가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를 “특정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종합보고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남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u>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u>인천광역시 남동구</u>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u>(이하 "<u>분석평가</u>"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u>분석평가</u>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남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u> 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 <u>남동구</u>----- --- <u>성별영향평가</u>에 ----- ----- ----- -----. 제2조(정의) ----- -----. 1. "<u>성별영향평가</u>"란 ----- ----- ----- ----- ----- <u>성별영향평가</u>하여 -----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별영향평가</u>----- ----- ----- -----. ③ ----- <u>성별영향평가</u>----- -----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
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
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
상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
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
로 한다.

1. ~ 3. (생략)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
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
서 제외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
평가-----

--- 조례로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
향평가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
업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남동구-----

4. -----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생략)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성별영향평가-----.

1. -----

남동구 -----

2. (현행과 같음)

3. -----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 남동구의회-----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 성별영향평가서-----.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 성별영향평가-----
-- 반영하여야 -----
----- 기금운용 -----.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
-----.

제10조(종합보고서의 작성) -----
----- 성별영향평가-----
----- 종합보고서-----
-----.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성별영향평가 -----
----- 남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② -----
-----.

1. ----- 성별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
천한 구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사람

3.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 위원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 성별영향평가업무

----- . <단서 삭제>

1. 남동구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3. (현행과 같음)

④

----- 성별영향

평가-----.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삭 제>

<삭 제>

<삭 제>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삭 제>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의 ---- 평가서 -----

3. ----- 성별영향평가-----

4. ----- 성별영향평가-----

5. (현행과 같음)

6.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성별영
향평가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정재호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성별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 3. 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3. 27.]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

양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제목개정 2016. 12. 20., 2017. 3. 21.]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 3. 27.>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부칙 <제15545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기회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비 : (안 제7조~ 제11조)
- 위원회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1회→2회) : (안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5. 16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동구의회 의원

제7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u>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u> 3. ~ 7.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 ⑤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u>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u>	<u>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 ----- <u>남동구</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2. 남동구의회 의원</u> 3. ~ 7. (현행과 같음) ④ ----- ----- ----- <u>한 차례</u> <u>만</u> ----- <u>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② ----- 2회 -----.

<삭 제>

<삭 제>

<삭 제>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정재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전부 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안 제2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교통봉사단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5. 16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동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호구역의 현황
 - 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다.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라.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마.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

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등·하교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기금 용자 대상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통사항 정비 :
(안 제7조~제8조, 제10조, 제12조~제13조)
- 기금 용자 대상 변경 : (안 제1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5. 16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고 1회에 한정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u>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남동구</u> ----- ----- -----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 ----- ----- <u>남동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u>인천광역시 남동구</u>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u>구</u> ----- ----- -----.
②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u>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u> -----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업무 담당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③ ----- 구-----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④ -----

-----명-----

-----.

⑤ -----

하되, 한 차례만 -----

-. <단서 삭제>

<삭제>

<삭제>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6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 -----

는 자로 한다.

1. · 2. (생 략)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
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조성민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6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07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0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07(간석동)	2019.5.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면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9,909-2,90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07	2009.7.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5.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10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89번길	30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189번길 3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0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61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 5.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 명칭	소 재 지	관리주체			
논현종합 사회복지관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2	남동구청장 (복지정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및 [별표31]	-	

210mm×297mm[백상지(80g/㎡)]